

## 2024 김해시장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공모

본회에서는 김해시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각 단체의 신청서를 접수해 적격 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동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선정 방향

- 가.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 1) 신규 참가자, 여성·중증 장애인 참여 인원이 많은 단체
  - 2) 운영 횟수, 홍보 매체 활용도가 높고 홍보 건수가 많은 단체
  - 3) 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 사업 장소의 편의시설 유무 등
- 나. 2023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를 준수한 단체 지원
- 다. 사업별 선정단체 개소 및 지원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 ※ 종목·지역·장애유형·단체별 안배 및 조정

### 2. 사업개요

- 가. 사업명: 2024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 나. 기간: 2024. 4. ~ 9. / 6개월
- 다. 장소: 김해시 일원
- 라. 지원개소: 12개소(국비 6, 도비6)
- 마. 지원내용: 운영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 바. 주최: 김해시장장애인체육회
- 사. 주관: 선정 단체
- 아. 후원: 경상남도,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 자.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

### 3. 공모안내

가. 공모기간: 2024. 2. 6.(화) ~ 2. 19.(월)

나. 접수기간: 2024. 2. 6.(화) ~ 2. 19.(월)

다. 신청대상: 관내 유관 기관 및 단체, 동호회

라. 신청자격

- 1) 김해시 소재 단체로서 장애인 참가인원이 10명 이상인 단체  
※ 종목 및 장애유형의 특성으로 10명 미만인 단체의 경우 협의 후 신청
- 2) 통합정보시스템 전문체육(엘리트) 선수 및 동호회(클럽) 등록자는 교실 참여 불가
- 3) 활동장소, 필요한동 용품 등이 구비되고 모든 운동 환경 조성된 단체
- 4) 단체장 및 담당자가 신용불량자인 단체는 지원 불가
-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거나 발급 가능한 단체
- 6)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 지원받지 않는 단체

마. 신청서 제출 안내

- 1) 제 출 처: 김해시장장애인체육회  
- 담당자: 안치훈 주임(연락처: 055-331-7071)  
- e-mail: anchihoon@gnsad.or.kr
- 2) 제출방법: e-mail 접수 / ※ 한글파일 제출 (pdf 파일 x)
- 3) 제출서류  
가) 2024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운영계획서 제출 공문 1부 <서식: 붙임 참조>  
나) 2024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운영계획서 1부 <서식: 붙임 참조>  
※ 본회 홈페이지에 양식 공지, 메일 제출 후 유선 연락 요망

바. 선정단체 발표

- 1) 김해시장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ghsad.kr) 게시
- 2) 단체별 개별통지

사. 행정사항

- 1)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전액 환수
- 2) 모든 사업은 현금집행 불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집행 원칙)
- 3) 국비지원 선정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에 기

관등록 및 e나라도움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필수

4)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보류 또는 중단(회수)

- ① 본회 및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로부터 운영지적을 받은 단체
- ② 운영진 부재 및 임원간의 내분이 있는 단체
- ③ 운영진 지도력 결여로 인한 회원 간의 불화 단체
- ④ 본회의 지시사항(자료요청, 결과보고, 정산보고 등)에 대해 불성실한 단체
- ⑤ 본회 또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선정단체 설명회, 역량강화교육 등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

5)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선정단체 행정평가 결과 40점 미만인 단체에 대하여 차기년도 사업 지원 제한 가능

6) 사업종료 후 정산은 30일 이내 정산(기간 준수)

## 4. 지원기준 및 항목

가. 지원항목

구분	사업구성	공통기준	비고
장애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① 지체장애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교실 주1회 6개월 이상 운영(최소 24회기)</li> <li>· 교실 구성인원: 10명 이상(지도자, 운영요원 제외)</li> <li>※ 중증장애인은 2배수 적용</li> <li>· 지원내용: 지도자수당, 운동용품, 홍보물 등</li> <li>※ 자산성 운동용품 구입 불가</li> <li>※ 기타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원여부 결정</li> <li>· 지원내용: 지도자수당, 운동용품, 홍보물 등</li> <li>· 시니어교실시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52%</li> </ul>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대상 개인용품 지원 가능(1인당 단가 100천원 이하 보급형 수준 용품 지원)  *증빙 서류제출
	② 지적장애교실		
	③ 청각장애교실		
	④ 시각장애교실		
	⑤ 이식장애교실		
	⑥ 중복 및 기타장애		
생애 주기별 생활체육교실	① 청소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 생활체육동호인 대상</li> <li>※ 전문선수 등록자가 포함된 클럽 지원 제외</li> <li>· 최소 6개월 이상 지원</li> <li>· 동호회 구성인원 15명 이상(매니저, 운영요원 포함)</li> <li>※ 중증장애인은 2배수 적용</li> <li>· 지원내용: 지도자수당, 운동용품, 홍보물 등</li> <li>※ 자산성 운동용품 구입 불가</li> <li>※ 기타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원여부 결정</li> <li>· 동호인클럽 고유번호증 필수 제출</li> <li>※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2025년도 사업 개편시 고유번호증 등록 필수</li> </ul>	*증빙 서류제출
	② 성인교실		
	③ 시니어교실		
동호회(클럽)	○ 동호회(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 생활체육동호인 대상</li> <li>※ 전문선수 등록자가 포함된 클럽 지원 제외</li> <li>· 최소 6개월 이상 지원</li> <li>· 동호회 구성인원 15명 이상(매니저, 운영요원 포함)</li> <li>※ 중증장애인은 2배수 적용</li> <li>· 지원내용: 지도자수당, 운동용품, 홍보물 등</li> <li>※ 자산성 운동용품 구입 불가</li> <li>※ 기타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원여부 결정</li> <li>· 동호인클럽 고유번호증 필수 제출</li> <li>※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2025년도 사업 개편시 고유번호증 등록 필수</li> </ul>	*증빙 서류제출

## 나. 예산항목

목	세목	항목	금 액	지원내용	비고
운영비	일반 수용비	지도자 수당	100,000원 이내	1일 기준 * 수어통역사 별도협의	교실
			50,000원 이내	1일 기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기관 소속직원 (종목지도자격입증) 수당 지급 시	
		운영요원 수당	30,000원 이내	1일 기준 운영기관 소속직원 등	교실
		클럽매니저 수당	월150,000원	지원기간 월별 정액지원	동호회
		운동용품	실 비	공동용품 지원 * 개인용품 지원 불가	교실, 동호회
		홍보물	실 비	현수막, 팸플릿, 포스터	교실, 동호회
	임차료	시설이용료	실 비	장소 임차비 및 입장료, 사용료 등	교실, 동호회
	기타 운영비	의료약품	실 비	소모성 의료약품 구입	교실, 동호회
	공공요금및 제세	보증보험가입	실 비	※ 자부담 필수 가입	교실, 동호회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간식, 음료 등	개소당 20만원이하	간식(음료 등) *식사금지	교실, 동호회

## 다. 주의사항

- 1) 사업계획 작성 시 지원항목과 기준금액만 지원가능하며, **사업별 수당의 총액은 보조금의 50%를 넘을 수 없음.**(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 협의 후 결정)
- 2) 지원항목 중 **운동용품**은 라켓류, 안전용품, 구기류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개별 가격이 100만원 이하의 용품을 말하며, **개인용품 및 피복비의 사용을 금함.**(단,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대상의 경우 1인당 단가 10만원 이하의 개인용품 및 소모용품 지원 가능)
- 3) 본회에서 파견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및 선정단체 소속 직원에게는 수당 지급이 불가함.(단, 선정단체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근 후, 주말 등 정규 근무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시간에 한하여 수당 지급 가능)
- 4) 수당지급 시 기타소득세, 지방세 공제 후 지급

라. 평가 선정 기준

1) 평가항목

구분	총점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여성·중증 참여도	홍보매체 활용도	자부담 비율	조정 점수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100	20	20	20	20	10	10

2) 배점기준

NO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1	운영횟수 (20점)	<table border="1"> <tr> <td>20점</td> <td>17점</td> <td>14점</td> <td>11점</td> <td>8점</td> </tr> <tr> <td>16회 이상~</td> <td>11회 이상~ 15회 이하</td> <td>6회 이상~ 10회 이하</td> <td>1회 추가~ 5회 이하</td> <td>최소 횟수</td> </tr> </table> <p>※ 최소 횟수는 각 사업별 최소 운영횟수</p>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16회 이상~	11회 이상~ 15회 이하	6회 이상~ 10회 이하	1회 추가~ 5회 이하	최소 횟수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16회 이상~	11회 이상~ 15회 이하	6회 이상~ 10회 이하	1회 추가~ 5회 이하	최소 횟수											
2	참여인원 (20점)	<table border="1"> <tr> <td>20점</td> <td>17점</td> <td>14점</td> <td>11점</td> <td>8점</td> </tr> <tr> <td>11명 이상</td> <td>7명 이상~ 10명 이하</td> <td>3명 이상~ 6명 이하</td> <td>1명 이상~ 3명 이하</td> <td>최소 인원</td> </tr> </table> <p>※ 참가자 중 장애인 참가인원(비장애인 제외)</p>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11명 이상	7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6명 이하	1명 이상~ 3명 이하	최소 인원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11명 이상	7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6명 이하	1명 이상~ 3명 이하	최소 인원											
3	여성·중증참여도 (20점)	<table border="1"> <tr> <td>20점</td> <td>17점</td> <td>14점</td> <td>11점</td> <td>8점</td> </tr> <tr> <td>31%이상</td> <td>30%~21%</td> <td>20%~11%</td> <td>10%~1%</td> <td>0%</td> </tr> </table> <p>※ 산식=[(여성장애인수 + 중증장애인수)/총인원수×100]</p>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31%이상	30%~21%	20%~11%	10%~1%	0%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31%이상	30%~21%	20%~11%	10%~1%	0%											
4	홍보매체활용도 (20점)	<table border="1"> <tr> <td>20점</td> <td>17점</td> <td>14점</td> <td>11점</td> <td>8점</td> <td>5점</td> </tr> <tr> <td>6개 매체</td> <td>5개 매체</td> <td>4개 매체</td> <td>3개 매체</td> <td>2개 매체</td> <td>1개 매체</td> </tr> </table> <p>※ 홍보매체: 현수막, 유인물, 인터넷(SNS), 중앙·지역 언론보도</p>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5점	6개 매체	5개 매체	4개 매체	3개 매체	2개 매체	1개 매체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5점										
6개 매체	5개 매체	4개 매체	3개 매체	2개 매체	1개 매체										
5	자부담비율 (10점)	<table border="1"> <tr> <td>10점</td> <td>8점</td> <td>6점</td> <td>4점</td> <td>2점</td> </tr> <tr> <td>41%이상</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 산식=[자부담/총 예산(보조금+자부담)×100]</p>	10점	8점	6점	4점	2점	41%이상	40%~31%	30%~21%	20%~11%	10%~0%			
10점	8점	6점	4점	2점											
41%이상	40%~31%	30%~21%	20%~11%	10%~0%											
6	조정점수 (10점)	○ 생활체육위원 조정점수 부여(0점 ~ 10점)													

## 5. 제한사항

가.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은 생활체육 전 종목 가능

- 1) 통합정보시스템 동호회(클럽) 등록자는 동일 종목 교실 참여 불가
- 2) 참가자 명단은 사전에 확보하여 제출 요망

나. 동호회(클럽) 지원 사업은 활동 인원 15명 이상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승인된 동호회(클럽)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보조금은 수당 등 지원항목 외 사용 금지

- 1) 동호회(클럽) 소속 전문체육(엘리트) 선수는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생략
- 2) 참가자 명단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명단과 동일하게 제출

다. 홍보는 매체별 2건 이상 반드시 준수

[현수막(배너), 인쇄물(팸플릿, 포스터), 인터넷(본회·단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언론매체(전국·도내 신문 및 방송) 등]

※ 본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홍보 게시물 작성 필수

라. 인쇄물 등 홍보매체에 반드시 주최, 주관, 후원, 재정후원 단체명 기재

○ 주최: 김해시장애인체육회 ○ 주관: 선정단체

○ 후원:  경상남도,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북권위원회

마. 사업 장소는 편의시설 설치 유무 확인 후 선정하고, 임차계약서를 작성 후 제출

※ 사업자 미등록 업체는 임차 불가

바. 시설이용에 따른 상해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응급처치체계 구축 필수

## 선정단체 평가 계획(안)

### 1. 목적

- 단체평가를 통한 지속적 지원 기준 마련으로 사업운영 질 향상
- 선정단체에게 사업 중요성에 대한 주의 환기 및 동기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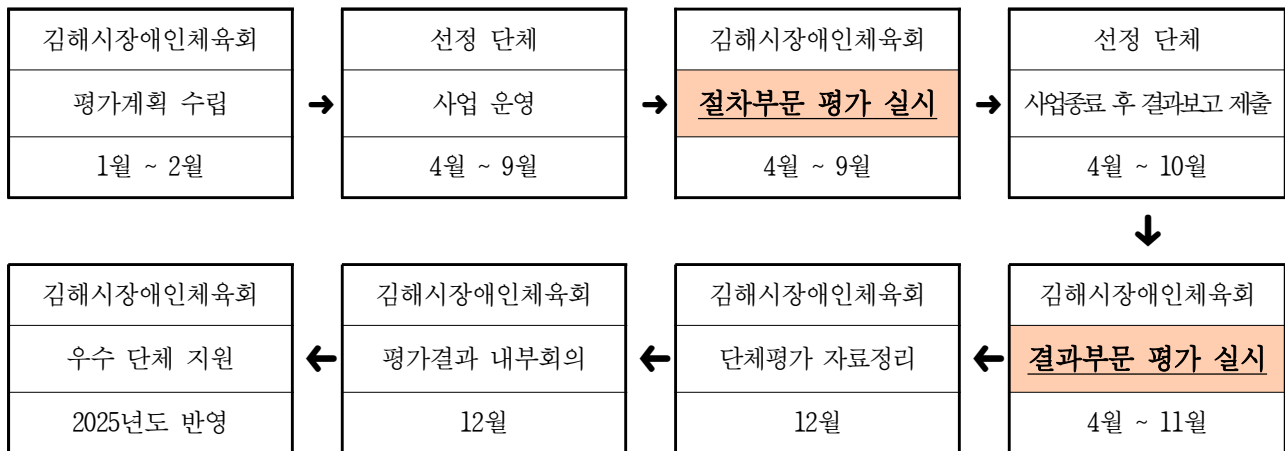
### 2. 평가방향

- 단체평가에 따른 결과는 차기년도 생활체육교실 및 대회 단체 선정 시 평가 자료로 활용 예정(평가는 총100점 만점 행정평가로 구성하고, 40점 미만인 단체에 대하여 차기년도 사업 지원 제한 가능)
- 절차부문은 회의참석 및 사업절차 준수 등 사업기간 중 실시하고, 결과부문은 예산 및 참가자 현황 등 결과보고서 접수 후 실시함

### 3. 평가대상

- 대상기관: 선정 단체

### 4. 추진일정



## 5. 평가 선정 기준

### 1) 평가항목

총점	절차부문(30)		결과부문(70)					
	사업설명회 참석	사업변경 절차준수	보조금 잔액발생	결과보고 제출일준수	자부담액 준수율	홍보건수	여성 중증 인원달성율	목표인원달 성율
100	15	15	10	10	15	10	10	15

### 2) 배점기준

No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1	절차부문 (30점)	선정단체 설명회 참석 (15점)	15점 유		0점 무		※ 사업설명회 참석 유무 평가(서명부 기재)
2		사업변경절차준수 (15점)	15점 유		0점 무		
3	결과부문 (70점)	보조금잔액발생 (10점)	10점 무		0점 유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유무 평가
4		결과보고제출일준수 (10점)	10점 유		0점 무		※ 사업 종료 후 30일내 제출 유무 평가
5		자부담액준수율 (15점)	15점 100%~91%	10점 90%~61%	5점 60%~31%	0점 30%~0%	※ 계획대비 자부담액 집행비율 평가
6		홍보건수 (10점)	10점 5건이상	5점 4건~2건	0점 1건 이하		※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 총 건수 평가
7		여성·중증인원달성율 (10점)	10점 100%~91%	6점 90%~61%	3점 60%~31%	0점 30%~0%	※ 계획대비 여성·중증장애 인원 목표달성율 평가
8		목표인원달성율 (15점)	15점 100%~91%	10점 90%~61%	5점 60%~31%	0점 30%~0%	※ 계획대비 순수참가자(장애인) 목표달성율 평가